

양돈협회 캠페인

해양배출 감축, 양돈농가 먼저 준비합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뉴스

- 홍 보 부 -

☒ "가축분뇨 자원화, 규제보다는 촉진율"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선 규제보다는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경종농가가 원활히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을 바꾸는 등 자원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포지티브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자원순환사회연대(대표 김정욱) 주관으로 지난 3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축분뇨 자원화 과제와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김동환 양돈협회장을 비롯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규제는 필수적이나 법의 취지에 맞게 너무 과도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원화 촉진을 위해 농지는 원칙적으로 살포가 가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경종농가에서 시비처방서만 있으면 액비살포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분한 부숙을 통해 생산된 냄새 없는 액비를 살포해야 하므로, 주거지역과 근접한 지역의 액비살포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률의 조

항 및 액비저장탱크별 등록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수분조절재 용도로 수입된 유박이 유기질비료로 둔갑, 가축분뇨 자원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곧 가축분뇨를 활용해 생산된 퇴비시장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의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수입유박이 유기질비료의 원료가 아닌 당초 수입목적대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림부와 양돈업계는 물론 환경부화 시민단체 역시 가축분뇨 자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정욱 자연순환연대 대표는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축산농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수요자인 농민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퇴비의 품질보증과 정부인증을 통해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제발표에 나선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는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마련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천문학적인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은 없고 수질개선효과도 미미했던 그간 가축분뇨 처리에 중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다양한 주체들이 실질적인 자원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축종 성장단계별 배출원 단위를 비롯해 축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예측, 지원, 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 “해양배출 저감 홍보용 포스터·팸플릿 배포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이 지난 '97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올해에는 해양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향후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중단되어, 지난해 가축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대책을 수립해 액비유통센터 및 액비살포비 지원 등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대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해양배출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양돈협회 등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서 꾸준히 홍보하여, 양돈농가에서도 해양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양돈협회와 협조,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들이 해양배출 감축의 불가피성 및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홍보용 포스터와 팸플릿을 제작해 해양배출 농가를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다. 특히 해양배출 양돈농가를 비롯해 지역 농·축협, 양돈협회 각 지부 등에 배포하여 해양배출 감축 필요성 및 자연순환농업 홍보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4월중에 현재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 3천호에 대한 가축분뇨처리 및 해양배출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 앞으로 농가별 감축이행 목표를 부여하는 등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해양배출 농가 가축분뇨 성분검사 7월부터 실시

- 해경 지정 전문검사기관 성분검사 후 신고필증 교부

대한양돈협회가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검사항목을 축소시킬 것을 지속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에 대한 해양배출 처리기준 적합여부를 위한 성분검사(25개 항목)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함량법에 의한 1기준 적용)에 의거 내년 2월 22일부터 해양배출 폐기물은 전문검사기관을 통한 성분검사 실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가축분뇨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자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성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해양배출 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은 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연구원, (주)명성과학기술연구원, (주)이화환경, (주)한국이앤씨, (주)해성환경, (주)원일화학엔환경, (주)램프런티어, (주)청룡환경, (주)산업공해연구소,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북대학교공동시험실습관 인증센터, FIT시험연구원, 태화환경(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개 기관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양배출 양돈농가에서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따른 25가지 항목을 검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만원 정도로 크게 부담이 됨에 따라, 양돈협회는 검사항목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기준(제1기준, 단위 : mg/kg, 건중량기준) 및 성분검사 항목(2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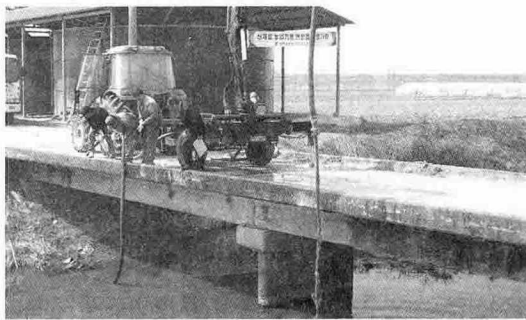
유분(광유류, 10,000), 시안화합물(200), 페놀류(4,0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1,850), 아연 또는 그 화합물(9,0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2,0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20), 수은 또는 그 화합물(5), 유기인

화합물(100), 비소 또는 그 화합물(145), 납 또는 그 화합물(1,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28·52·101·118·138·153·180(0.15), 나프탈렌(4), 페난트렌(5), 안트라센(4), 벤조(a)피렌(4.5), 플루오란텐(10), 벤조(a)안트라센(5), 벤조(b)플루오란텐(4)

● 검사절차

검사신청(위탁자(양돈농가)→전문검사기관)→(7일 이내)시료채취(전문검사기관)→성분검사(전문검사기관)→(시료접수후 30일 이내)시험성적서 교부(전문검사기관→위탁자)

☒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침전물 제거기 시연회 개최



지난 3월 23일 충남 청양군 액비저장조 설치농가에서, 최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와 축산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액비저장조 침전물 제거기에 대한 현장시연회가 개최됐다.

농업공학연구소는 충남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회를 통해 침전물제거기의 기능 및 특징을 양돈농가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농업공학연구소에서 개발된 침전물 제거기는 트랙터로 견인할 수 있는 장치로 높이 4m, 도달거리 10m의 크레인-뿔으로 흡 배출 호스를 이동, 액비저장조 내 상등액과의 교반을 통해 침전물 퇴적층을 파괴하여 제거하는 방식이다. 특히 침전물 교반 후 액비살포기를 통해 배출 또는 호스로 직접 살

포도 가능하다. 특히 침전물 교반성능은 300톤 규모의 액비저장조에서 교반시간이 1시간이 소요되는 등 작업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공학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교반전 상하층 함수율이 90~70%인 3백톤 규모 액비저장조의 경우 1시간 교반후 상하층 함수율을 80~75%로 균질화 시킬수 있다”며 “침전물 제거기를 직접 배출에 이용하고 트랙터 견인 호스 살포방식으로 침전물을 배출, 운반, 살포까지 할 경우엔 17시간이 채 소요되지 않아 인력을 동원할 때 보다 85%의 작업시간 및 72%의 비용절감을 각각 기대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공학연구소측은 침전물 제거기의 생산기술을 민간업체에 이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 농지에 축사 외 부속시설도 포함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농지(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4월 9일자로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이에 맞게 수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지의 범위를 축사와 그 부속시설로 하고, 부속시설의 범위를,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관리·출하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 당해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는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했다.

■문의 : 농림부 농지과 ☎ 02)500-1670 **양돈**